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역 내 통합방위 상황 재해재난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임무수행은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함.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유

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임.

나. 검토의견

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기능과 절차, 그리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의 활용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를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.